

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

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

- KB 타겟리턴 안정형 OCIO 증권 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신탁계약서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 이 경우 주식 및 채권 관련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하며, 주식, 투자부적격 등급 채무증권, 부동산 및 원자재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미만으로 한다. 2. ~ 7. 생략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1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이상으로 한다. <u>이 경우 아래 각 목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한다.</u> <u>가.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</u> <u>50%미만으로 한다.</u> <u>나.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5%이하로 한다. 다만,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한다)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로 한다.</u> <u>다. 가 목 및 나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, 투자부적격 등급 채무증권, 부동산 및 원자재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미만으로 한다.</u> 2. ~ 7. <u>좌동</u>
	제23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①~⑤생략	제23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①~⑤좌동 (신설) <u>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가 운용행위 등의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없어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.</u>
	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	

2. 변경(예정)일: 2026년 08월 07일(금)